**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작성 방법**

1.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서울중부기술교육의 파트너 기관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.

2. 협약서, 일반현황 공란없이 모두 작성해 주셔야 교육 입과 가능합니다.

3. 원본은 교육 첫날 HPE교육센터에 제출

4. 협약서 3페이지 작성방법

* 담당자: 회사에 교육 담당자 인적사항 작성란입니다.(없을 경우 교육신청자분 인적사항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.)
* 주민등록번호: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교육신청: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(한 ID로 여러명 이름 변경으로 사용 불가능 합니다.)
* 신청교육과정: 과정별로 협약서 따로 제출 해주셔야 입과 가능합니다.

**틀린 예)**

**올바른 예)**

**협약서는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**

**문의사항: 양유희 T:02-3470-2124 F:02-3470-2119 E: yoo-hee.yang@hpec.co.kr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서****서울특별시 중부·남부기술교육원 (중부캠퍼스)** (이하 “공동훈련센터”라 한다)와 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(이하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(이하 “지역ㆍ산업 맞춤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지역․산업 맞춤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‘지역ㆍ산업 맞춤 사업’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반영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2. 협약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과정 개발ㆍ운영 지원3.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생 선발 시 협약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층면접, 훈련기관 견학, 채용지원 계획 등 훈련내용 및 협약기업의 채용 정보에 대한 사전 탐색 기회 제공 4.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의 역량수준 진단, 맞춤형 1:1 취업 컨설팅 제공,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5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약기업은 재직근로자와 채용(예정)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1.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수요조사 및 직무ㆍ수준별 훈련과정 설계, 훈련생 선발 면접 등에 참여2. 필요할 경우 소속 재직근로자 중에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교육훈련 강사로 참여3.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에 대한 적극적 채용 협력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역ㆍ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「고용보험법」제27조 및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「고용보험법」제27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이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역ㆍ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5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역ㆍ산업 맞춤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역ㆍ산업 맞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지역ㆍ산업 맞춤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이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2024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**(공동훈련센터)** | **(협약기업)** |
| **서울특별시 중부·남부기술교육원****(중부캠퍼스)** |  |
| 사업장관리번호: |  |
| **주 소 :** |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| **주 소 :** |  |
| **대표자(원장) :** | **김 종 원 (인)** | **대표자 :**  | **(인)** |

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※ 첨부서류 :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|

【첨부】

|  |
| --- |
|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|
| \*회사명 |  | \*대표자명 |  |
| \*주소(본사) | 우편번호( - ) |
| \*업 태 |  | \*업 종 |  | \*상시근로자수 |  |
| 담당자 | \*성 명 |  | HRD부서명 |  |
| \*전화번호 | 사무실:휴대폰: | FAX |  |
| \*전자우편 주소 |  | 홈페이지 주소 |  |
| \*사업장관리번호 |  | \*사업자등록번호 |  |
| **◯ 교육신청자 인적사항 (인원이 많을 경우 별첨 사용가능)**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NO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핸드폰번호 | e-mail | 신청 교육과정 |
| 1 |  |  |  |  |  |
| 2 |  |  |  |  |  |
| 3 |  |  |  |  |  |
| 4 |  |  |  |  |  |
| 5 |  |  |  |  |  |

【 기타사항 】 |

\* 표시는 필수 기재